

제 3 자의 의사표시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Dusseldorf 지방법원 1988. 8. 10 판결

-12 0 306/88 사건 -

적용법조

Nordrhein-Westfalen 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1. 원문기사에서 제 3 자의 의견 또는 가치판단이 그대로 인용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어떤 기사의 피해자가 그 보도된 사실을 허위라고 다투고 있음이 이미 원문기사의 내용으로부터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원이 스스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여기에는 단순히 일부분만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정정보도문은 피해자의 고도의 인격권적인 의사표시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이는 삽입이나 삭제 없이 그대로 공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안의 구성은 인격적인 의사표시이어서 제 3 자에게 위임 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개요

제 1 피신청인은 「Dusseldorfer Express」 라는 잡지의 발행인이고, 제 2 피신청인은 위 잡지의 책임편집인이다. 위 잡지의 1988년 6월말 및 7월초의 호에 이 사건 신청인에 관한 몇 가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소송에서 『나는 B에게 2만마르크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B 사건 서부독일방송(WDR)에서도 역시 뇌물 공세를 받았다」, 「B가 시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988. 7.13 자 가처분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B가 시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이 명하여졌다. 나머지의 신청에 대하여는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일련의 정정보도에 관한 점들 이외에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의 질서벌을 가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정정보도문을 「Dusseldorfer Express」 라는 잡지에 게재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하였다.

즉 「……위 기사들은 어떤 사업상의 모임에 어떤 한 사람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위 사업상의 모임에 있어서, 내가 경리부장에게 어떤 쪽지를 전하여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인상을 내가 주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진실이다 : 즉 나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경리부장에게 어떤 쪽지를 전하여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인상을 준 일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결코 내가 의도하였던 바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B 사건: 서부독일방송(WDR)도 역시 뇌물공세를 받았다」는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전문기사에 나타난 위와 같은 문언을 단순히 부정함에 그치고 있고,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판결이유

가처분의 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구두변론에 나타난 신청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이유가 없다. Nordrhein-Westfalen 주 언론법 제 11 조에 의한다면, 「B 사건: 서부독일방송(WDR)도 역시 뇌물공세를 받았다」는 기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권리가 신청인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기사들은 어떤 사업상의 모임임에 어떤 한 사람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위 사업상의 모임에 있어서 내가 경리부장에게 쪽지를 전하여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인상을 내가 주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진실이다. 즉 나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경리부장에게 어떤 쪽지를 전하여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인상을 준 일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결코 내가 의도하였던 바도 아닌 것이다.」라는 정정보도문으로써 신청인은 원문기사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상의 모임에 참석하였던 참석자의 요약된 인용문을, 피신청인이 그 스스로의 것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위인용문을 반복함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장을 발표하는 경우에만,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용된 제 3자가 표시한 의견 및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청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위 인용문은, Johannes Rau 와 관련하여 주의 회로부터의 보도에 대한 간섭을 비판하고 있는, 서부독일방송의 비밀문서를 신청인이 사업상의 모임에서 그의 서류가방으로부터 꺼내서 경리과장인 Nowotny 에게 건네 주었다고 하는 사실상의 주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 B 가 이 쪽지를 전하여 경리부장에게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섞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위 사업상의 모임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판단도 다음과 같은 인상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신청인이 작성한 위 쪽지는, 주 의회에 관한 보도의 침해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 경리부장에 대한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신청인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요약된 인용문의 사실상의 주장들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청인은 위 인용된 모임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사업상의 모임에서, 경리부장에 대하여 어떤 쪽지를 전달함으로써 모종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 추리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진실의 입증에 도움이 되지도 아니하는, 위 인용된 참석자의 가치판단에 대하여 그 자신의 가치판단을 대비하여 주장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이 위 사업상의 모임에서 서부독일방송의 비밀문서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인용문에서 나타난 주장에 반대하여 주의회에 관한 보도에 대한 간섭을 하기 위하여 경리과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다면, 이 정정보도문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상이 야기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진실이나 또는 허위냐 하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가치판단적인 관점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 사업상의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인용된 사람이 어떤 쪽지가 제시되었다는 틀림없는 사실로부터, 신청인이 경리과장에 대하여 모종의 지시를 내렸었다는 인상을 일깨워주려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주관적으로 형성된 가치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부터 만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나머지의 점, 즉, 「나는 이미 B에게 2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이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여기에는 정정보도문 중의 일부를 단순히 삭제함으로써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은 고려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정정보도문이라는 것은 이 청구를 하는 신청자의 고도의 인격권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무런 추가나 삭제 없이 그대로 인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안의 구성은 인격적인 표현으로서 제 3자에게 위임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Löffler Presserecht 3. Auflage LPG NW §11 Rd.-Nrn 206/207 참조).

다음으로 「B 사건: 서부독일방송(WDR)도 역시 뇌물의 공세를 받았다.」는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이 정정보도문의 게재에 대하여 하등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그의 정정보도문안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상의 주장, 즉 신청인이 위 인용된 회사의 사장으로 부터 돈을 받았고, 그의 수수료 요구가 서면으로 어떤 쪽지 위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여 저서는 아니 된다는 점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문기사에서 주장된 사실상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 만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NW 주 언론법 제 11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하등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미 원문기사 그 자체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다투고 있는 사실상의 주장에 이어서 바로 「그 (B)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문기사 자체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회사의 사장」이 그에 관하여 주장한 사실상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음이 이미 나타나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보아서, 원문기사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부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다른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주장을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의미 및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미 원문기사의 내용 중에 언급되어 있고 그의 정정보도문 중에서 이미 원문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범위를 넘는 어떠한 다른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보도문의 공표에 대하여 반드시 전제로 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